

주주 귀하

제 86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 18 조에 의거 제 86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 542 조의 4, 동법시행령 제 31 조의 ①, ②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전자공시시스템) 함으로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6일(목요일)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 1로 94 유유제약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결의사항

제 1 호 의안 : 제 86 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 주당 배당금액 : 보통주 115 원, 1 우선주 125 원, 2 우선주 125 원

※ 제 1 호 의안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이 동의할 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진행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노용 재선임)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상언 재선임)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

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http://dart.fss.or.kr>)하여 조회가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여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2026 03 월 16 일 ~ 2026 년 03 월 25 일

기간 중 24 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 시부터, 마감일은 17 시까지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등(K-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상법시행령 제 31 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 4 항 제 4 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 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s://www.yuyu.co.kr>)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주식회사 유 유 제 약
대표이사 유 원 상, 박 노 용 (직인생략)



【별 첨】

■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안)	변경목적
제 19 조 【소집지】	제 19 조 【소집지】 ② <u>회사는 상법 제 542 조의 14 제 1 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u>	상법개정 반영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개정 반영
제 28 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1 조 【이사의 보선】 ③ 사외이사가 해임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한다. 제 33 조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 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u>독립이사</u> 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1 조 【이사의 보선】 ③ <u>독립이사</u> 가 해임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한다. 제 33 조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의 6 배(<u>독립이사</u> 의 경우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 할 수 있다.	상법개정 반영
제 39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방법】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9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방법】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독립이사</u> 로 한다. ③ 삭제	상법개정 및 연번변경

현행	변경(안)	변경목적
<p>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p> <p>⑥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⑧, ⑨</p>	<p>③ <u>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독립이사</u>로 한다.</p> <p>⑤ <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⑦, ⑧ <u>연번변경</u></p>	
<p>제 45 조 【이익배당】</p> <p>② 제①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제 45 조 【이익배당】</p> <p>② 이 회사는 ①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p>
<p>부칙</p> <p>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 85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 86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다만, 제 19 조 및 제 25 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며, 제 3 조(감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 39 조 ⑥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p>	<p>개정 상법 시행 시기에 맞는 부칙 신설</p>

■ 제 3 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노용 재선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박노용 (1970.09.22)	바르샤바 경제대 경영학 석사 前 유유제약 경영지원본부장 現 유유제약 대표이사	이사회	해당없음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제 4 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상언 재선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상언 (1955.03.05)	前 (주)태준제약 사장 前 (주)알앤바이오 사장 前 (주)HK inno.N 고문 現 강남구 보건소 의사	이사회	해당없음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정기주주총회장 약도

- 대중교통 : 제천역,버스터미널 도착 시, 제천 중앙공원(동산) 앞, 학산/제천공고 방면 버스 40번
- 자 가 용 : 영동고속도로(원주방향) → 문막 → 만종(JC) → 중앙고속도로 → 남원주 → 제천 IC → 제천바이오밸리방향 (약 10분소요)

